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 등 대상(안 제4조)
 -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·외 도시
- 의회동의 등(안 제7조)
 - 국외도시 자매결연 시 의회 동의
- 자매결연 등 체결(안 제8조)
- 교류사업의 지원(안 제9조)
 -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노력
- 자매결연 파기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국내·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,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의 목적과 용어정의, 적용범위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, 받을 경우, 검토할 사항과 상호 교류여건 조성, 협력방향 모색 등 사전 교류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,
- 안 제7조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, 변경 또는 파기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8에는 자매결연 체결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
-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, 교류사업의 각종 편의제공 등 재정 지원과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1조에서는 지속적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,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,
-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국내·외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,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도시간의 특색을 드러내고,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유대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,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 도시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 지원, 지속적 교류활동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, 변경 또는 파기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,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, 자의적인 파기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국·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 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구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7조 중 “국외”를 “국내·외”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6. 21.
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국·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구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수정내용

- 안 제7조 중 “국외”를 “국내·외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7조 중 “국외”를 “국내·외”로 함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의회동의) 구청장은 <u>국외</u>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.	제7조(의회동의) ---- <u>국내·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매결연 등 대상(안 제4조)
- 나. 자매결연 등의 제의 및 사전교류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자매결연에 대한 의회동의 및 체결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교류사업의 지원(안 제9조)
- 마. 사후관리 및 파기 (안 제10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 - 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17. 5.11.~ 5.31. /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·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매결연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·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(이하 “국내·외 도시”라 한다)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, 경제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.

2. “우호협력”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자매결연 등 대상)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·외 도시로 선정한다.

제5조(자매결연 등의 제의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내·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·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면적, 인구 및 행정,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
2. 산업,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
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
6.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

② 국내·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제6조(사전교류) ① 구청장은 국내·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·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.

②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.

제7조(의회동의)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8조(자매결연 등 체결)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·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.

②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,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·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9조(교류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·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, 사회단체, 기업 등의 국내·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,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사후관리)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한

다.

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, 협약서·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매결연 파기) 구청장은 국내·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